

제4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

-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을 중심으로 -

엄 태 봉**

1. 머리말
2. 제4차 회담 이전의 문화재 반환 교섭
3. 제4차 회담 개최와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교섭 방침
 -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1958년 5월 21일자 훈령
 - 2) 주일대표부의 일본 현지 조사
4.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출과 문화재 목록 준비
 - 1)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출
 - 2)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 3) 문화재 목록의 준비
5.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의 의미
6.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제4차 회담(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9일)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이하, 제1차 반환청구항목) 등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준비와 일본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시기의 논의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인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 1951~1965年』의 일부를 가필·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의교수.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둘러싼 문제임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인식을 둘러싼 문제였다.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모두 불법이었다는 인식을 가진 한국 측과,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반출된 문화재 또한 정당한 절차를 통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가진 일본 측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회담 타결 직전까지 격론을 펼쳤다.

초기 한일회담(제1차~제3차)에서는 문화재 반환 여부를 둘러싼 원칙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고, 회담 중단기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구두전달사항을 논의했다. 제4차 회담에 들어서자, 한일 양국은 문화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 측이 제시한 '제1차 반환청구항목' 등을 논의하면서 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특히 문화재소위원회의 설치는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초기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소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¹⁾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제4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한일 양국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고 했지만, 동 문제를 청구권 문제에서 '분리'하려는 일본 측의 방침이 제4차 회담에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동 문제가 '조기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논한 선행연구가 있는 정도이다.²⁾ 그 외에는 제1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의 문화재 반환 교섭의 일부분으로 이 시기를 간략하게 다루면서, 한국 측이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제출했지만, 일본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는 정도로 그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³⁾

1)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의 과정은 엄태봉, 2019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26-2, 209-211면 참조.

2) 長澤裕子, 2011 『日韓會談と韓國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 請求權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Ⅱ: 脱植民地化編』(李鍾元他), 法政大學出版局, 205-234면.

제4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이 시기의 교섭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소위원회 개최가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 이외에 문화재 목록 논의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도 연구 주제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제4차 회담 시기는 한국 측이 본격적으로 기존의 문화재 목록을 검토하고 일본 현지 조사를 실시했던 시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거의 없었고, 이 시기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가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 측은 제4차 회담 시기에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일회담의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는 제4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검토한다. 문화재 반환 교섭 당시, 한국 측은 제1차 회담 때부터 제6차 회담까지 여러 차례 문화재 목록을 제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제5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의 7항목’(이하 반환 7항목)과 제6차 회담의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이하, 반환청구목록)이다. ‘반환 7항목’은 제5차 회담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부터 제6차 회담의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반환청구목록’은 제6차 회담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열린 문화재관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인도 품목 작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1차 반환청구항목’은 제4차 회담 시기 내내 일본 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한

3)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高崎宗司, 1986 『日韓會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42-43면;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375-376면; 박훈, 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363-364면; 조운수, 2016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141-143면이 있다.

차례 논의되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동 항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 항목은 본문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반환 7항목'과 '반환청구 목록'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제4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은 전체적인 교섭 과정의 일부로 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있어서 이 시기의 논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각각의 문화재 반환 교섭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섭 과정의 양상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를 것이다. 제4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검토를 통해 이 시기의 논의가 갖는 의미를 밝혀낸다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1차 사료로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먼저 제2장에서는 초기 한일회담과 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제4차 회담의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교섭 방침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측이 제출한 '제1차 반환청구항목' 및 한국 측의 동 교섭에 대한 평가와 문화재 목록 준비를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제1차 반환청구항목'이 '반환 7항목', '반환청구목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동 항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2. 제4차 회담 이전의 문화재 반환 교섭

한일 양국은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 1951년 10월 말에 한일회담을 개최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초기 한일 회담 시기 당시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점, 각 회

담의 시기가 길지 않았다는 점 등 내용적·시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⁴⁾

제1차 회담⁵⁾에서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 관련 8개 항목을 정리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이하 8개 항목)을 일본 측에 제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동 요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8개 항목 중,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항목은 제1항목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 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이 그 내용이었고, 이후 한국 측은 제1항목에 대해 한국의 의사에 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반환해 줄 것을 일본 측에게 요구한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한국 측은 ‘한일 간 청구권협정 요강안 한국측 제안의 상세 목록’(이하 상세안)을 제출한다. 상세안은 8개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인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고서적 관련 열두 곳의 도서관 및 문고, 미술품·공예품 관련 각각 두 곳의 박물관 및 대학, 그리고 개인소유의 문화재들을 반환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제2차 회담(1953년 4월 15일~7월 23일)이 열리자 한국 측은 5월 14일에 개최된 비공식회담에서 고서적 상세목록인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본 각 문고 소장’과 미술품·공예품의 상세목록인 ‘일본 소재 한국 국보 미술품공예품 목록’을 일본 측에게 제출하고, 일본 측에게 동 목록들에 대한 조사 현황을 문의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방대한 양으로 인해 이를 모두 조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한국 측은 문화재에 관한 사실 관계를 능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비공식 회담 개최를 요구했다.⁶⁾ 제5차 회담 때 처음 개최되었던 ‘전문가회의’로 추측되는 이 비공식 회담의 개최를 일본 측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제2차 회담 종료로 인해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다.

4)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엄태봉, 2020 『초기 한일회담(1차~3차)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외교사적 연구』 『한국학』 158, 277-290면 참조.

5) 제1차 회담은 1951년 10월 20일부터 1952년 2월 14일까지 열린 예비회담과 1952년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열린 본회담으로 진행이 되었다.

6) 日本外交文書, 『日韓交渉會議事要錄(二二) 第三回請求權關係部會』, 1953년6월11일, No.693. 이하에서는 문서제목, 일시, 문서번호로 일본외교문서를 표기한다.

제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0월 21일)에서는 반환의 법적의무를 둘러싼 대답이 부각되었다. 한국 측은 10월 15일에 개최된 제2회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제2차분)’을 일본 측에게 제출하는데, 일본 측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을 통해 반출된 것은 없다, 의무로써 반환할 것은 없다, 청구권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로 적당한 것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반출 경위가 정당하다면 이는 일본 측이 입증해야 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청구권 문제이다, 한국 측은 법적인 견해를 주장할 것이라라고 응수했다.⁷⁾ 동 위원회에서 일본 측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식민지 시혜론을 언급하면서, 제3차 회담이 중단이 되었고,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한 주요 의제들의 논의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 한일회담 시기에 있어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내용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목록 제출과 해당 논의가 시작된 점, 전문가회의의 전신 격인 문화재전문가 간의 비공식회담이 합의된 점, 반환의 법적 문제가 부각된 점 등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사안들이 나타난 시기였다. 즉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이후의 교섭에 있어서 그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⁸⁾

제3차 회담이 중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비공식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현안 해결 및 한일회담의 재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비공식 회담은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것, 인도될 문화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개되는 회담에서 토의할 것이라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한일 양국은 논의 끝에 1958년 12월 31일, 일본정부가 구보타 발언 및 역청구권을 철회한다는 것 등에 합의하고, 다음해에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문화재 반환 문제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일본국정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한국 미술품으로 즉시 인도 가능한 것을 대한민국에게 건네기로 하고, 그 외의 한국 미술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 토의 및 논의하기로 한다”⁹⁾라는 구두전달사항이 합의되었다.¹⁰⁾

7) 『再開日韓交渉議事要錄 請求權部會第二回』, 1953年10月15日, No.173.

8) 엄태봉, 2020 앞의 논문, 292면.

3. 제4차 회담 개최와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교섭 방침

1)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1958년 5월 21일자 훈령

제4차 회담(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9일)이 시작되자, 일본 측은 회담 개최 다음날에 106점의 문화재를 한국 측에게 인도했고, 한국 측은 주요 의제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교섭에서 구두전달사항을 근거로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문화재소위원회 설치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정부는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문화재 반환 교섭 원칙이 담긴 '1958년 5월 21일자 훈령'을 작성한다. 동 훈령에는 제4차 회담에서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와 이후의 교섭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훈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관한 1958년 5월 21일자 훈령¹⁾

제목	내용
1. 의제 우선 순위	이 소위원회의 의제는 a) 한국 미술품의 반환, b) 그 외의 청구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측이 본래 한국 미술품에 대한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던 이유이다. “그 외의 청구권”은 “한국 미술품의 반환”의 만족스러운 처리 이후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후자의 문제가 예비회담 이래로 이미 그 합의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2. 한국 예술품 반환에 대한 선수(先手)	한국 미술품 반환 논의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아측은 106점과 498점 이외에, 일본 측이 우리에게 반환할 준비가 된 한국 예술품의 완전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소유하고 있는 한국 미술품을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일본 측이다. 일본 측이 아측에게 건넬 준비가 된 최종적인 목록 제출을 정부가 확인하기 전에, 한국 예술품에 대한 우리의 목록을 절대 일본 측에게 건네지 않는다. 2) 다음 단계에 대한 아측 교섭자의 대응은 나중에 지시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의 미술품 목록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 비밀리에 통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측은 준비한 미술품 목록을 일본에게 건네지 않기로 한다.

9) 『韓國關係文化財參考資料』, 1958년2월6일, No.567.

10) 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엄태봉, 2017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21, 166-185면을 참조.

3. 파견위원의 미술품 조사	아측의 파견위원, 특히 미술품 전문가는 일본 소유 미술품에 대한 우리의 목록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미술품의 가치, 생산 연도와 언제, 어떻게 미술품이 한국에서 반출되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한다. 그리고 정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4. 개인 소유의 미술품	아측 교섭자는 일본정부 소유의 한국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 혹은 단체가 사적(私的)으로 소유된 것들도 정부가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5. 한국 미술품의 정의	한국 미술품의 의미는 이전의 PS/9 지시에서 이미 정의되었다.

이 훈령의 첫 번째 특징은 한일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청구권 문제보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예비회담 이래로 이미 그 합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란, 회담 중단기 때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을 말하는데, 교섭 당시 한국 측은 "그 외의 한국 미술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 토의 및 논의하기로 한다"는 문장을 구두전달사항에 삽입하도록 강하게 요구했고, 반대하던 일본 측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정부는 인도된 106점의 문화재 이외의 다른 문화재의 인도를 논의한다는 원칙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동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청구권 문제 논의에 임하려고 했었고, 이를 위해 초기 한일회담 당시 청구권위원회에서 청구권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재소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문화재 목록과 조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 또한 106점 이외의 다른 문화재들의 인도를 논의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측에 대한 문화재 목록 제출 요구가 있는데, 이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 건넨 준비가 된 최종 문화재 목록을 받은 후, 그것을 한국 측이 조사한 문화재 목록과 비교하려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측의 문화재 목록을 비교한 후, 일본 측 목록에는 있지만, 한국 측 목록에 없는 것은 일본 측

11) 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1958.4.15~60.4.19) 문화재 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1958』(이하,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GUIDING PRINCIPLES FOR NEGOTIATIONS AT THE FOURTH KOREA-JAPAN CONFERENCE』, 프레임 번호: 171-17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하에서는 문서철, 문서제목, 프레임 번호로 한국외교문서를 표기한다.

목록을 근거로 돌려받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국 측 목록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문화재 목록에 대한 검토와 문화재 반출 경위 등의 조사, 국유·사유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 원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106점 이외의 문화재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문화재들을 돌려받을지를 조사해야 하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일본 측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문화재 목록과 조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정부는 구두전달사항에서 “그 외의 한국 미술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면회담에서 토의 및 논의하기로 한다”는 문화재 반환 문제 원칙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함께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일본 측이 제출한 문화재 목록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문화재를 돌려받을 것인가를, 문화재 반환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재소위원회에서 결정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한일회담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청구권 문제와 함께 다뤄져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 구두전달사항을 통한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제4차 회담 당시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그 실행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일대표부의 일본 현지 조사

제4차 회담은 7월에 발생한 북송문제로 인해 7월 말부터 약 2달 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재소위원회도 6월 4일에 한 차례만 개최된다. 이 시기 주일대표부는 그 동안 실시해 온 일본 현지 조사에 대한 결과를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전송하는데, 당시 한국정부가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본 현지 조사는 5월 21일 훈령에 따라 그 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황수영¹²⁾이 이를 담당했는데, 그는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12) 황수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

문화재 목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하는 한편, 인도 받은 106점의 문화재와 양산부부총 관련 489점의 문화재에 대해 평가하는 등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일대표부는 7월 7일자로 황수영이 작성한 ‘제1차로 반환된 문화재 106점의 평가에 대하여’, ‘대일청구한국문화재목록 검토의 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의 종별 수량에 관하여’에 관한 보고서를 전송한다. 먼저 106점의 문화재에 대해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지만, 그 가치가 크지는 않다는 점, 금전적인 가치는 20만 내지 30만 엔 정도가 된다고 평가했다.¹³⁾ 다음으로 기존 문화재 목록에 대해서는 “1945년 이전의 문서 또는 간행물과 같은 문헌자료를 주요한 근거로 하여 재일본문화재 전반에 대해 작성된 만큼 자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의 패전 이후 개인 소유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의 소유자와 소재지의 변동이 크다는 점, 문화재 반출 시기를 1905년 이후로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문화재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 문화재 목록 작성 당시 누락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조사할 문화재가 상당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기존 문화재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문화재 목록 수정을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혼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토로했는데, 특히 개인 소유 문화재는 범위가 넓고 종류도 많으며,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 일본 각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고서적과 개인 소유 문화재 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¹⁴⁾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일청구한국문화재목록’¹⁵⁾

업했다. 해방 후 개성상업중학교 교감으로, 1948년부터는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고고미술사학 연구에 헌신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출강하는 한편, 1956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었고, 1971년부터 3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기도 한다. 한국미술사학계의 태두로 불교미술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99%A9%EC%88%98%EC%98%81&ridx=0&tot=1>(검색일: 2020년 4월 11일).

- 13)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제1차로 반환된 문화재 106점의 평가에 대하여』, 프레임 번호: 195-206.
- 14)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대일청구한국문화재목록 검토의 건』, 프레임 번호: 200-203.
- 15) ‘대일청구한국문화재목록’은 외교문서상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해당 목록이 초기 한일회담에서 제출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

중 1항목, 2항목에 수록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목록은 식민지 시기 때의 자료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간행된 '도쿄국립박물관소장품목록'을 바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 도쿄국립박물관에는 한국 문화재가 고고자료 3,038점, 금속공예품 797점, 도자기 386점 등 총 5,617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보고했다.¹⁶⁾

주일대표부는 이후에도 7월 14일자의 '문화재 489점(양산부부총 발굴품)의 평가에 대하여'와 7월 21일자의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고려자기에 관하여',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소장품 신목록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전송한다. 7월 14일자 보고서에서는 양산부부총과 관련된 문화재들에 대해 물품의 성질, 발굴 연대와 원소재지, 발굴경위, 유물의 종류와 고고자료로서의 가치, 시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화재 및 학술자료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¹⁷⁾ 7월 21일자 보고서에서는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자기 386점 중, 98점이 최우수품이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7년에 통감으로 부임한 후, 우수한 고려자기를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반출경위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구라의 소장품은 개인이 소유한 한국 문화재 중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정부가 작성한 목록의 오구라 소장품은 1945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오구라 소장품에는 1,000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했다.¹⁸⁾ 한편 한

본 각 문고 소장', '일본 소재 한국 국보 미술공예품 목록',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제2차분)'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재 목록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별개의 목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대일청구한국문화재목록'의 내용과 그 외의 문화재 목록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 16)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의 종별 수량에 관하여』, 프레임 번호: 204-206.
- 17)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문화재 489점(양산부부총 발굴품)의 평가에 대하여』, 프레임 번호: 208-212.
- 18)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문화재 목록 검토의 건』, 프레임 번호: 214-217. 한편 한국정부는 문교부에 주일대표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문교부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1905년이라는 반출시기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문화재 추가 목록을 바탕으로 문화재 목록의 수정을 요청했다. 또한 전적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보고에 관한 건』, 프레임 번호: 223.

국정부는 상기 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문화재 반환 시기 기점을 1905년으로 할 경우, 기존 문화재 목록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시할 것, 개인 소유 문화재 보다는 일본정부 소유 문화재를 먼저 철저히 파악할 것 등 지속적인 조사를 지시했다.¹⁹⁾

이와 같이 당시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문화재의 범위와 종류 등이 상당하여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측은 제4차 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이는 문화재 목록 작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갔다.

4.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출과 문화재 목록 준비

1)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제출

복송문제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제4차 회담이 1958년 10월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문화재소위원회도 다시 열리게 되었다. 문화재소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 개최 이래, 약 4달 만에 개최되었으나, 논의 자체는 진전이 없었다. 한국 측은 구 두전달사항을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의 원칙이 정해진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 현지 조사와 문화재 목록 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재 반환 교섭에 임하려고 했으나, 일본 측이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제2회(10월 4일), 제3회(10월 11일), 제4회(10월 18일) 문화재소위원회와 두 번에 걸친 비공식회담(10월 10일, 10월 20일)에서 한국 측은 489점의 문화재를 신속하게 건네줄 것,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을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아직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정부의 훈령을 받지 않았다는 점,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 등

19)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보고에 관한 건』, 프레임 번호: 221.

을 들면서 한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10월 25일)에서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제시한다. 한국 측이 동 항목을 제시한 이유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논의는 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²⁰⁾ 즉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면서, 일본 측을 구체적인 논의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²¹⁾

〈표 2〉 제1차 반환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²²⁾

항목	내용
제1항	지정문화재(『중요미술품』을 포함)
제2항	소위 조선총독부(『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해 반출된 것
제3항	소위 통감·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
제4항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제5항	고려시대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제1차 반환청구항목'은 황수영이 문교부 원안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문교부 원안은 ① 한국문화재로서 일본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것, ②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리 25번지 소재 고분 유물, ③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리 16호 고분 유물, ④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정백리 127호·227호 고분 유물, ⑤ 평

20) 『第四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請求權小委員會(文化財)の第五回會合』(이하, 第4次會談第5回文化財小委員會), 1958년10월25일, No.445.

21) 한국정부는 10월 22일자 훈령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에게 한국미술품 489점을 지체 없이 수교할 것과 한국에게 넘길 수 있는 모든 목록의 제출을 요구한다. 만약 일본 측이 모든 목록의 제출을 주저한다면,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대답을 위해서 적어도 1,000개(대표단 결정으로 선택)가 담긴 목록을 제출하고, 추가 목록이 나중에 제출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인다”라는 훈령을 보냈고, 주일대표부는 이 훈령에 따라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제시했다.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Instructions for future conduct of negotiation at the 4th Korea-Japan Conference』, 프레임 번호: 15.

22) 『第四次會談第5回文化財小委員會』, 1958년10월25일, No.445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석암리 201호 고분 유물, ⑥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남정리 116호 고분 유물, ⑦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왕간묘 유물, ⑧ 소위 통감총독에 의해 분출된 미술공예품, ⑨ 경상남북도 소재 고분 그 외 유적 출토 유물, ⑩ 고려시대 고분 그 외 유적 출토 유물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황수영은 10월 23일자 보고서에서 먼저 제1항목을 수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에서 ‘국보’, ‘중요문화재’라는 명칭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또 ‘중요미술품’이라는 명칭은 그에 해당되는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신구(新舊) 명칭들을 총괄하여 ‘지정문화재’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명칭 사용의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일제시기에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반출되어 지정될 당시에는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라는 두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해방 후 일본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국보’가 전부 ‘중요문화재’로 개칭되었으므로 이 같은 점도 고려했다.²³⁾

다음으로 문교부 원안의 제2항목에서 제7항목까지를 제2항목으로 통합한 이유는 조선고적연구회(제2항목~제6항목)와 도쿄대학(제7항목)이 발굴·반출한 동일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수영은 문교부 원안의 10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재구성한 후, 각 항목을 설명하는 자료도 작성했다.²⁴⁾ 이처럼 한국정부는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문화재 목록을 보다 현실성 있게 수정하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었다.

한국 측은 황수영의 설명 자료를 통해 ‘제1차 반환청구항목’의 각 항을 개략적

23)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의 건」, 프레임 번호: 242-243.

24) 황수영의 수정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논의는 외교문서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다. 황수영의 수정안이 일본 측에 그대로 제시된 것을 볼 때, 해당 수정안이 한국 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황수영의 보고서 등 주일대표부가 제출한 일련의 보고서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주일대표부에 제시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일대표부와 한국정부 간의 보고서 등과 관련한 논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밝힐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으로 설명한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품목을 설명할 예정이며, 고서적과 그 이외의 문화재에 관한 제2차, 제3차 반환 요구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측에는 문화재 전문가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화재에 관해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²⁵⁾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임하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국 측은 제6회(11월 1일)부터 제12회(12월 13일)까지의 문화재소위원회와 비공식회담(11월 7일)에서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이었다.²⁶⁾ 일본 측은 제12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동 위원회를 잠시 휴회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문화재소위원회가 정제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답변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연내에 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²⁷⁾

제2차, 제3차 반환 요구 목록을 제출하겠다는 한국 측의 발언과 후술할 ‘반환 7항목’을 볼 때, ‘제1차 반환청구항목’이 당시 한국 측의 요구하려던 문화재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동 항목이 제4차 회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그

25) 『第4次會談第5回文化財小委員會』, 1958年10月25日, No.445.

26) 한국 측은 비공식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 상황을 ‘상하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 문제이며, 한국 측에서는 예비협정에서 결정된 것을 왜 받지 못하는가로 당황하고 있다. 정말 곤란한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진전이 없는 교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第二十一回澤田林會談要旨』, 1958年11月7日, No.316. 한편 일본 측은 한국 측과의 논의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1차 반환청구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외무성은 문화재보호위원회에 동 항목의 조사를 의뢰했는데, 해당 문화재들은 도쿄국립박물관 등의 국유 문화재와 그 외 개인 소유 문화재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합법적으로 발굴, 혹은 정당한 취득절차를 통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第四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小委員會五回(33.10.25)における韓國側の要求に對する意見』, 1958年10月, No.445.

27) 『第四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請求權小委員會(文化財)の第一二回會合』, 1958年12月13日, No.445.

리고 실제로 일본 측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측이 문화재 목록의 완성을 높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평가

1958년 10월 1일부터 재개된 제4차 회담은 북송문제로 인해 1959년 1월부터 또다시 중지되었다. 한일 양국은 제11회 본회의(8월 12일) 개최를 계기로 제4차 회담을 재개했으나, 대부분 북송문제 논의에 집중했고,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의제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몰려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4차 회담도 막을 내리게 된다.

한국 측은 제4차 회담이 중단된 시기에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자료'(1959년 8월 11일)를 작성하고, 주요 의제들과 회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먼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 제4차 회담은 이렇게 할 성과가 없었고, 주요 의제들도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석하면서, 그 원인이 일본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 등 다른 의제들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제들을 먼저 해결한 후에,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전략은 문화재 반환 문제와 선박 문제를 토의하면서 일본 측의 태도를 파악하고, 제4차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고 평화선 문제 등 어업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얻어야 다른 문제의 토의에 응한다는 지연작전을 취했는데,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회담 진행 방법의 차이가 북송문제와 함께 제4차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막았다고 분석했다.²⁸⁾

한편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12번에 걸쳐 문화재소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지연작전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으며, 이 지연작전은 다른 위원회보다도 문화재소위원회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문화재소위원회

28)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이하, 『제4차 회담 교섭 및 훈령』) 『제4차 한일회담 대표에 대한 설명자료』, 프레임 번호: 157-158.

가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국내법 규정과 국내 여론에 의해 한국 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 동 문제가 다른 의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489점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일본 측 문화재 목록 제출에 대한 회답이 없었던 것, 한국 측의 '제1차 반환청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거부한 것을 들면서 "소위원회는 우리에게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할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고 문화재소위원회 논의를 평가했다. 일본 측이 비공식회담에서 제의한 국유 문화재 인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들이 과연 타위원회에서 어떤 소득을 얻기 전에 전면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신에서 그들 정부 소유의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공언할 용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라고 평가했다.²⁹⁾

이와 같이 한국 측은 제4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일본 측의 지연작전에 그 원인이 있으며,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에서 그것이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문화재 목록의 준비

한편 한국정부는 1959년 10월 7일자 훈령에서 일본 측에 청구할 '일본 소재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을 주일대표부에 송부하고, 해당 문화재가 되도록 빨리 반환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했다. 동 목록에는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 '고서적 누적 목록',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 '개인소유의 한국문화재 청구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한국 측이 요구하려고 했던 문화재의 종류와 수량 등 한국 측의 요구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58년 5월 22일자 훈령 이후, 주일대표부가 일본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보고하면서 문화재 목록을 수정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볼 때, 상기 목록은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9) 『제4차 회담 교섭 및 훈령』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59-161.

먼저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은 일본정부 소유 문화재와 비정부 소유 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에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재 5,617점, 도쿄대학 소재 412점, 교토대학 소재 345점 등 총 6,471점의 문화재가, 후자에는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 1,002점, 이치다 지로(市田次郎) 소장 292점, 야쓰이 세이치(安井濟一) 소장 1,863점 등의 특정 인물 소유 문화재 함께 그 외의 개인이 소유한 도자기 744점, 불화 70점, 서화 44점, 종 7점, 그리고 그 외의 석조물 6점, 기와 1,338점 등 총 6,018점이 제시되어 있었다.³⁰⁾

한편 주일대표부가 일본 측과 교섭을 하면서, 일본 측이 개인 소유 문화재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제1차 반환청구항목’ 중 80점의 개인 소유 문화재는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동 항목 중 개인 소유 문화재 80점을 제외한 935점의 문화재와 489점의 양산부부총 관계 문화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려받아야한다고 지시했다.³¹⁾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동 항목을 제시했을 때는 문화재의 수량이 적혀있지 않았는데, 한국정부가 송부한 목록에는 제1항목 지정문화재 81점, 제2항목 소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 201점, 제3항목 소위 통감·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 104점, 제4항목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434점, 제5항목 고려시대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195점 등 총 1,015점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중 개인 소유 문화재는 제1항목 81점 중, 80점을 차지하고 있었다.³²⁾

‘고서적 누적 목록’에는 내각문고(內閣文庫) 2,566책, 궁내청 도서료(宮內廳圖書寮) 895책, 동양문고(東洋文庫) 4,900책 등 18곳의 소재지와 18,288책이 제시되었고,³³⁾ 고서적은 다른 미술품과 함께 해결해야 하며, 1905년 이전에 반출된 내각문고와 궁내청 도서료에 대한 청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시되었다.³⁴⁾ 이 목

30)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CUMULATIVE LIST OF ART OBJECT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IN JAPAN』, 프레임 번호: 251-252.

31)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Korean Claims against Japan(Art Objects & Vessels)』, 프레임 번호: 248-249.

32)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CUMULATIVE LIST OF ART OBJECT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IN JAPAN』, 프레임 번호: 253-254.

33) 한국의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252-253.

34) 『제4차 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Korean Claims against Japan(Art Objects & Vessels)』,

록은 제1차 회담 때 한국 측이 제시한 상세안의 1항목에 기재되어 있었던 12곳의 소재지 보다 더 조사된 것이었다.³⁵⁾

‘개인 소유의 한국문화재 청구품목’에는 지정문화재 80점, 오구라 소장품 1,002점, 이치다 소장품 292점 등 총 1,374점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 목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오구라와 이치다가 다시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의 비정부 소유 문화재에서 이들은 이미 거론되었다. 외교문서에서 이들이 재차 거론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한국정부가 개인 소유 문화재 중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그 만큼 중요하고, 이를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4차 회담 시기, 한국정부는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함께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면서 문화재 목록들을 작성했다. 해당 목록들은 일본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가 모두 조사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제1차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항목’의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은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작성한 후,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이를 일본 측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후 한국 측은 제5차 회담과 제6차 회담에서 각각 ‘반환 7항목’과 ‘반환청구목록’을 제시했고, 한일 양국은 이 목록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한다. 특히 제6차 회담에서 ‘반환 7항목’과 ‘반환청구목록’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논의는 제7차 회담의 문화재 인도 품목 작성의 기반이 되었다.³⁶⁾ 이와 같이 제4차 회담에서 제6차

프레임 번호: 249.

35) 상세안 1항목에는 고서적 소재지 12곳 미술·공예품 소재지 5곳이 기재되어 있었다. 상세안의 자세한 내용은 『日韓會談第三回請求權委員會議事錄要錄』, 年月不明, No.1177 참조.

회담에 걸쳐 문화재 목록들이 차례로 제시되었는데, 이 목록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본장에서는 ‘제1차 반환청구항목’이 ‘반환 7항목’과 ‘반환청구목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한국의 정세가 점차 회복되면서, 한일 양국은 제5차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다. 한일 양국은 제2회 본회의(1960년 11월 2일)에서 제4차 회담과 동일하게 기본관계위원회, 한국청구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국청구권위원회의 문화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1월 11일에 열린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의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고, 처음부터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환 7항목’을 제시한다.³⁷⁾

〈표 3〉 문화재 반환의 7항목³⁸⁾

항목	내용
제1항	일본정부에서 「중요 문화재」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제2항	소위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고적연구소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
제3항	소위 통감·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
제4항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제5항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제6항	서화, 전적 및 지도 원판
제7항	일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36) 제6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조운수, 앞의 논문, 145-150면 및 엄태봉, 2018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 60, 117-153면 참조.

37)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이하, 『제5차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 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제1회 회의 회의록』, 프레임 번호: 9.

38)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9-10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동 항목은 제4차 회담에서 제시된 '제1차 반환청구항목'에 제6항과 제7항을 추가한 것으로, 개인 소유 문화재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제4장 제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 '고서적 누적 목록', '제1차 반환 청구한국문화재항목', '개인소유의 한국문화재 청구품목'을 정리했는데, 이 때 정리한 개인 소유 문화재 목록을 '제1차 반환청구목록'의 7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고서적 등이 제6항으로 추가되어 '제1차 반환청구항목' 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반환 7항목'은 제5차 회담에서 열린 두 번의 전문가회의 중 제2회 전문가회의(1961년 5월 8일)에서 제1항목부터 제3항목까지 논의되고, 5.16 쿠데타로 인해 제5차 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그 논의가 중단된다. 이후 제6차 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4월 5일)이 개최되면서, 제7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반환청구목록'이 제시될 때까지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 '반환 7항목'의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여섯 차례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반환 7항목'의 반출 경위와 현소재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³⁹⁾

이후 한국 측은 제7회 문화재소위원회(1962년 2월 28일)에서 '반환청구목록'을 제시한다. 동 목록의 제출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데, 동 위원회는 권한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화재 목록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돌려받을 문화재들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기존의 전문가회의가 비공식적이고 권한이 없는 회의였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측은 원래 동 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반환청구목록'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일본 측도 동 위원회 개최에 동의했지만, 일본 측 건

39) 한국 측은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12월 18일)에서 전문가회의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갔고 조사 의뢰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회담이나 조사가 반드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유감도 있었으나, 하여간 계속해서 사실 확인을 해 왔다. 예를 들면 데라우치 문고의 일본 서화의 확인, 오구라 박물관이 문화재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장품을 우리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주선할 것, 또 원래 자리에 돌릴 것은 돌려야 한다는 좋은 의견도 개진되었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러한 전문가회의에서 사실 확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1964』(이하, 제6차 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프레임 번호: 52. 이를 통해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반환 7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가들은 계속해서 참가를 거부했고,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을 먼저 받은 후에 참가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측은 특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문화재 목록을 제시할 경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동 목록에 대해 이유를 붙이게 되면 문제가 끝이 없게 되어,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없을 것”⁴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 측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반환청구목록’을 먼저 제시하게 된다.⁴¹⁾

〈표 4〉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⁴²⁾

항목	상세 내용
제1항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	① 경상남도 양산부부총 출토품
	② 경주 노서리 215번지 고분 출토품
	③ 경주 황오리 제16호 고분 출토품
	④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정백리 127, 227호분 출토품
	⑤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석암리 201호분 출토품
	⑥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남정리 116호분 출토품
	⑦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왕간표 출토품
제2항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	① 이토 히로부미 고려자기
	② 소네 아라스케 한국 전적
	③ 테라우치 마사타케 전적, 서화, 불상
	④ 통감부 장서
	⑤ 가와이 고민(河合弘民) 장서(관부기록)
제3항 일본 국유의 다음 항목에 속하는 것	①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② 고려시대 분묘,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③ 체신 관계 문화재
제4항 지정문화재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및 그 외
제5항 그 외	① 야쓰이 세이치 소장품
	②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③ 이치다 지로 소장품
	④ 석조미술품

40) 『제6차 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제6차 공식회의 회의록』, 프레임 번호: 69.

41) ‘반환청구목록’을 확인한 일본 측 전문가들은 특별위원회 참가를 거부했고 결국 특별위원회 개최는 무산되고 만다.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논의는 엄태봉, 2018 앞의 논문, 126-137면 참조.

42) 『제6차 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반환청구한국문화재목록』, 프레임 번호: 85-86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반환청구목록’은 각 항목별로 제1항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학 소장), 제2항 1,371점(고려자기 103점, 서화 245점, 불상 8점, 전적 1,015책), 제3항 758점(도쿄국립박물관, 체신 박물관 소장), 제4항 80점(오구라 개인 소유), 제5항 1,581점(개인 소장품 중 오구라 이외 3인) 등 총 4,479점이었다.⁴³⁾ 동 목록은 한국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문화재 목록이라는 점,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 ‘반환 7항목’ 논의와 함께 이 목록의 논의를 기반으로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인도 품목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반환청구목록’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 먼저 ‘반환청구목록’의 작성 시기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훈령이 내려진 1962년 1월 25일부터 특별위원회 설치가 제안된 2월 1일의 비공식회의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1월 25일자 훈령에는 “아측은 7개 항목에 따라서 품목 선정안을 작성하여 일본 측에게 제시”⁴⁴⁾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반환 7항목’을 바탕으로 ‘반환청구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제6차 회담이 개최되기 전, 한국정부는 1961년 7월 12일자의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문서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웠는데, “전문가는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문화재목록을 작성”⁴⁵⁾ 한다는 내용에서 볼 때 이미 제6차 회담 개최 전후로 문화재 목록 작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반환청구목록’이 “대체로 7항목의 선에 따라 세분화”⁴⁶⁾ 된 것에서 볼 때, ‘반환 7항목’을 재구성하고 상세 목록들을 추가하는 작업은 크게 시간을 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반환 7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환청구목록’을 작성한 이유는 요구할 문화재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문화재 목록을 논의하고 돌려받을 문화재를 확정지으려고 했던 한국 측은,

43) 종류별 점수는 고고미술품 3,186점(국유 1,272점, 개인 소유 1,914점), 전적 1,015점, 체신 관계 문화재 278점이었다.

44)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1 7-8월)』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한일 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에 관한 건』, 프레임 번호: 76-79.

45)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회담 운영 방안 건의』, 프레임 번호: 192.

46) 『제6차 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 제7차 공식회의 회의록』, 프레임 번호: 79.

요구할 문화재를 보다 명확하게 목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방법이 범위가 큰 ‘반환 7항목’을 재구성하고 상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즉 한국정부는 제6차 회담 개최를 전후로 하여 ‘반환 7항목’을 중심으로 문화재 목록 검토 작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돌려받을 문화재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반환청구목록’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 목록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반환받을 문화재들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반환청구목록’은 제7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이후, 여섯 차례 열린 문화재관계회의⁴⁷⁾에서 야스이 세이치 소장품, 석조 미술품,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 통감부 장서 등의 고서적,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와 그 외 유적 관련 문화재, 고려시대 분묘와 그 외 유적 관련 문화재 등의 반출 경위와 현소재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5차 회담과 제6차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반환 7항목’과 ‘반환청구목록’은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되면서, 완성도를 높여간 것이었다. 제4차 회담 당시 기존의 문화재 목록 수정과 일본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제1차 반환청구항목’이 작성되었고, 한국 측은 이를 제시한 후 논의하려고 했다. 제5차 회담에서는 ‘제1차 반환청구항목’에 개인 소유 문화재와 고서적 등 두 개 항목이 추가되어 ‘반환 7항목’이 작성되었고, 한일 양국은 제5차 회담과 제6차 회담에서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문화재 목록 논의에 임한다. 그리고 한국 측은 반환받을 문화재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반환 7항목’을 수정하여 ‘반환청구목록’을 작성했고, 이는 제6차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제4차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한 문화재 목록 작성은 한국 측이 제시할 문화재 목록 작성의 기반이 되었고, 이는 제5차 회담 이후의 문화재 목록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47) 문화재관계회의는 예비교섭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전문가회의의 성격을 가졌으며, 1963년 2월 13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제6회 문화재관계회의(4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6. 맺음말

본고는 제4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시기의 논의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한국 측은 제4차 회담이 시작되자, 회담 중단기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을 근거로 문화재 반환 문제만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화재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일본 측은 설득시키면서 동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편 기존의 문화재 목록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 결과, '제1차로 반환된 문화재 106점의 평가에 대하여', '대일청구한 국문화재목록 검토의 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의 종별 수량에 관하여', '문화재 489점(양산부부총 발굴품)의 평가에 대하여',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고려자기에 관하여',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신목록에 관하여' 등이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 측은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문교부가 작성한 문화재 목록을 수정하여, '제1차 반환청구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에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문화재 목록 논의를 시도한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동 항목 논의는 진전이 없었지만, 이후에도 한국 측은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계속 실시하면서, '일본 소재 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 누적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상당수의 문화재 수량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한국 측은 제4차 회담 당시,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문화재 목록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일본 측에 제시된 '제1차 반환청구항목'은 제5차 회담의 '반환 7항목'과 제6차 회담의 '반환청구목록'의 기반이 되었다. '반환 7항목'은 '제1차 반환청구항목'에 고서적과 개인 소유 문화재 등의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된 것이고, '반환청구 목록'은 '반환 7항목'의 항목들을 재구성한 후, 세부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이

문화재 목록들은 제5차 회담과 제6차 회담에서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문화재관계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인도 품목을 작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이 제4차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문화재 목록 검토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 문화재 목록이 수정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고, 이는 제5차 회담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문화재 목록 논의라는 핵심적인 논의 사항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즉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있어서 제4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문화재 목록 작성과 문화재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주제어 : 한일회담, 제4차 한일회담, 제1차 반환청구항목, 문화재 목록 검토, 일본 현지 조사

투고일(2020. 5. 1), 심사시작일(2020. 5. 26), 심사완료일(2020. 6. 1)

〈Abstract〉

A Study on the Negotiation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4th Korea-Japan Talks
- Focusing on 'the List of Korean Cultural Property
on the 1st Claim for Return' -

Um, Tae Bong *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discussion of 4th Korea-Japan talks regarding on negotiation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aning of 'the List of Korean Cultural Property on the 1st Claim for Return' from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review on the list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fieldwork in japan conducted by Korean side.

During 4th Korea-Japan talks, Korea has reviewed the list of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and conducted the fieldwork in Japan. And the list of claiming cultural properties was revised and presented to the Japan. By repeating these procedures, Korea was able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As such, the review of the existing list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fieldwork in japan during 4th Korea-Japan talks form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for the negotiation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fter the 5th Korea Japan talks. In this regard, the discuss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4th Korea-Japan talks was significant in the survey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preparation of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on negotiation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Korea-Japan talks.

Key Words : Korea-Japan Talks, The 4th Korea-Japan Talks, The List of Korean art objects on 1st Claim for Return, The Review on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The Fieldwork in Japan

* Teaching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aejin University.